



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

## 업무협약서

서울남부지방법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간에 업무를 협조하기로 하여 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### 제1조 (법원 연계형 조정의 실시)

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협의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구성원을 민사조정법 제10조에서 정하는 조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조정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한다.

### 제2조 (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의무)

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제1조 기재와 같이 위촉된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배정된 조정사건을 성실하게 처리하도록 하며, 이를 위하여 조정회의실 제공 등 제반 사항에 관하여 협조한다.

### 제3조 (세미나, 교육 협력과 정보 공유)

서울남부지방법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조정제도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하고, 법관 연수, 조정위원의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력하며,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상호 공유한다.

### 제4조 (조정 수당의 지급)

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본 약정에 따라 조정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



리하는 조정위원에게 대법원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, 조사비용, 그 밖의 여비, 일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5조 (교육비용 등의 부담)

본 약정의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육비용이나 경비 등의 부담에 관하여는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, 별도의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각자 부담한다.

#### 부 칙

1. 본 약정은 서울남부지방법원과 한국콘텐츠진흥원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발효하며,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2. 본 약정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기관으로부터 해지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
3. 본 약정 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약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4. 11. 12.

서울남부지방법원장

김 문 석

김문석

한국콘텐츠진흥원장

홍상표

홍상표